

가가호호 아이들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 보건복지가족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8대 국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09. 12. 29.)에서 불임과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 12. 31일 자로 공포되고 시행령에 따라 이를 통보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 보건복지가족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



주무관 배성진 행정사무관 박창규 의료자원과장 정윤순  
01/06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과-109 (2010. 01. 06.) 접수  
우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현대빌딩 8층 의료자 / http://www.mw.go.kr  
원과  
전화 02-2023-7318 전송 02-2023-7333 / bb8566@korea.kr / 대한민국공개

도와취요 고미취요 희망의 전화 129

법률 제 9906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료인은”을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88조 본문 중 “제19조,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  
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생략)</p> <p>②의료인은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u> ----- ----- ----- -----</p>
<p>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제20조를 위반한 경우</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p>	<p>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 ----- -----</p>



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신 설>

제91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  
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  
라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  
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  
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